

의안번호	제795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5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이동우,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상정,
변종오

1. 제안이유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및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함 (안 제3조)
 -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개정)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 지원내용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을 신설함. (안 제6조)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정한”을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업비”를 각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으로 한다.

1.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포함) 지원 사업

6.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

제8조의 제목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로당활성화”를 “경로당 활성화”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u>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u>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 <u>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u>----- ----- -----.</p>
<p>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u>각 호에 정한</u>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로당 운영비</u> 2. <u>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u> 3. <u>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u> 4. <u>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 참여활동 관련 사업비</u> 5. <u>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비</u> <u><신 설></u> 6. (생략)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p>제6조(지원내용) ----- ----- <u>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포함) 지원 사업</u> 2. ----- <u>사업</u> 3. ----- ----- <u>사업</u> 4. ----- ----- <u>사업</u> 5. ----- ----- <u>사업</u> 6. <u>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u>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 <u>사업</u>

<p>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그 밖에 <u>경로당활성화</u>에 관한 사항 	<p>제8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u>경로당 활성화</u>----- -----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내용)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경로당의 냉난방비(양곡비) 구입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25년 예산 가내시 산출기초 반영, 지원대상 수는 5년간 연평균 증가 수를 적용하여 산출

구분	단 가(천원)		산출내역(2025년 가내시 기준)			
	사업비	개소당	개월당 (천원)	지급횟수	경로당수	집행계수
냉방비	1,293,000	330	월 165	× 2개월(하절기: 7~8월)	× 4,404개소	× 88.9%
난방비	7,837,000	2,000	월 400	× 5개월(동절기: 1-3 / 11-12월)	× 4,404개소	× 88.9%
양곡비	2,444,000	628	약 52	× 12포대(20kg)	× 4,402개소	× 88.9%

※ 산정기준: 2025년 경로당 관련 사업 예산가내시(노인복지과-4311, '24. 9. 13.)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지원대상

(20)4,204개소, (21)4,213개소, (22)4,237개소, (23)4,265개소, (24)4,276개소, (25)4,404개소

평균 연간 40개소 증가 ⇒ (26)4,444개소, (27)4,484개소, (28)4,524개소, (29)4,564개소

-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사업은 기추진 중인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5개년 평균 예산액으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냉·난방 및·양곡비: ('25년)11,574,000, ('26년)11,673,516, ('27년)11,771,550,
('28년)11,869,404, ('29년)11,967,172천원
- 경로당 기능보강: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5년(2020~2024년) 평균
예산액 869,900천원 적용
※ ('20)907,800천원, ('21)1,230,000천원, ('22)827,700천원, ('23)751,500천원, ('24)632,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냉·난방 및 양곡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매칭 지원
-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5,787,000	5,836,758	5,885,790	5,934,702	5,983,586	29,427,836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5,787,000	5,836,758	5,885,790	5,934,702	5,983,586	29,427,836
경로당 시설개선	0	0	0	0	0	0
세 출	12,443,900	12,543,416	12,641,450	12,739,304	12,837,072	63,205,142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11,574,000	11,673,516	11,771,550	11,869,404	11,967,172	58,855,642
경로당 시설개선	869,900	869,900	869,900	869,900	869,900	4,349,500
재원 조달	12,443,900	12,543,416	12,641,450	12,739,304	12,837,072	63,205,142
국 비	5,787,000	5,836,758	5,885,790	5,934,702	5,983,586	29,427,836
도비	2,606,001	2,620,927	2,635,628	2,650,311	2,664,976	13,177,843
시·군비	4,050,899	4,085,731	4,120,032	4,154,291	4,188,510	20,599,463